

2015 월간 중국농업 브리프

농정 이슈

12년 연속 삼농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	1
‘식량안보 성장(省長)책임제’ 실시	6
기타 주요 농정	12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14
소비자물가	16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17
대 세계 식량 수출입	19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22

주요 단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韩国农村经济研究院 北京代表处

농정 이슈

◆ 12년 연속 삼농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¹⁾

□ 개요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國務院)은 2015년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농촌개혁과 농업현대화 건설을 제시하고, 12년 연속 삼농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였음.

표 1 2004~2015년 ‘중앙 1호 문건’

발표 날짜	문건 제목
2004. 2. 8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促進農民增加收入若干政策的意見》
2005. 1.31	농업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농촌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進一步加強農村工作提高農業綜合生產能力若干政策的意見》
2006. 2.21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若干意見》
2007. 1.29	현대농업의 적극적인 발전과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의 착실한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積極發展現代農業紮實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若干意見》
2008. 1.20	농업기초시설 건설 강화, 농업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切實加強農業基礎建設,進一步促進農業發展農民增收的若干意見》
2009. 2. 1	2009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2009年促進農業穩定發展農民持續增收的若干意見》
2010. 1.31	도시와 농촌 통합발전 강화 및 농업·농촌 발전 기초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加大統籌城鄉發展力度,進一步夯實農業農村發展基礎的若干意見》
2011. 1.29	수리 개혁·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결정 中共中央、國務院《關於加快水利改革發展的決定》
2012. 2. 1	농업과학기술 혁신 추진 강화와 농산물공급 보장능력 지속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加快推進農業科技創新持續增強農產品供給保障能力的若干意見》
2013. 1.31	현대농업 발전 가속화와 농촌발전 활력 증대에 관한 약간의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加快發展現代農業進一步增強農村發展活力的若干意見》
2014. 1.19	농촌개혁 전면 심화 및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全面深化農村改革加快推進農業現代化的若干意見》
2014. 2. 2	개혁·혁신의 확대 및 농업현대화 건설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加大改革創新力度加快農業現代化建設的若干意見》

1) 본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中共中央·國務院(2015.2.2), 〈關於加大改革創新力度加快農業現代化建設的若干意見〉; 《新華社》(2015.2.2), 〈解讀“一號文件”: 中國要強, 農業必須強〉.

- 2015년 ‘중양 1호 문건’은 농촌 개혁과 혁신의 확대 및 농업현대화 건설 가속화라는 핵심 기조 하에 △현대농업 건설을 위한 농업발전 방식의 전환 가속화, △농민 소득증대 촉진을 위한 해농정책 강화, △도농 통합발전을 위한 신농촌건설의 추진, △농촌의 발전 활력 증진을 위한 전면적인 농촌개혁 심화, △삼농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농촌 법치 건설 강화 등 5대 주요 업무 목표와 32개 항목의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음.

표 2 2015년 ‘중양 1호 문건’의 주요 내용

업무 목표	중점 추진업무
① 현대농업 건설을 위한 농업발전방식의 전환 가속화	1. 식량생산능력의 지속적인 강화 2. 농업구조조정의 심도있는 추진 3. 농산물 품질 및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 4. 농업과학기술 혁신 추진 역할 강화 5. 농산물 유통방식 혁신 6. 농업생태관리 강화 7. 국내·국제적 양대 시장과 자원의 총괄적인 이용능력 제고
② 농민 소득증대 촉진을 위한 해농정책 강화	8. 농업·농촌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 보장 9. 농업 보조정책 효과 제고 10. 농산물 가격형성메커니즘 완비 11. 농업 사회화 서비스 강화 12. 농촌 1·2·3차 산업 융합발전(6차산업화) 추진 13. 농촌의 외부 소득증대 채널 확대 14. 농촌 빈곤구제·개발 대대적인 추진
③ 도농 통합발전을 위한 신농촌건설의 심도있는 추진	15. 농촌 인프라건설 확대 16. 농촌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17. 농촌 주거환경 전면적인 정비 추진 18. 사회자본의 농촌 투자 유도·장려 19. 농촌지역 사상·도덕 건설 강화 20. 농촌지역 기층 당조직 건설 강화
④ 농촌의 발전 활력 증진을 위한 전면적인 농촌개혁 심화	21. 신형 농업경영체계 구축 가속화 22. 농촌 집단재산권제도 개혁 추진 23. 농촌토지제도 개혁시범사업 점진적 추진 24. 농촌금융체제 개혁 추진 25. 수리 및 임업 개혁 심화 26. 소비구매협동조합 및 농간개혁 발전의 가속화 27. 농촌거버넌스 메커니즘 혁신 및 완비
⑤ 삼농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농촌 법치 건설 강화	28. 농촌 재산권보호 법률제도 완비 29. 농업시장 규범운행 법률제도 완비 30. 삼농지원 보호 법률제도 완비 31. 법에 의거한 농촌 개혁 발전 보장 32. 농촌 기층 법치수준의 제고

□ 현대농업 건설을 위한 농업발전 방식의 전환 가속화

- 현대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원투입에 의존한 조방적 농업경영에서 경쟁력 제고, 농업과학기술의 혁신,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는 집약적 농업경영으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함.
- 식량생산능력의 지속적인 강화 및 농업구조조정 추진
 - － 식량생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량생산의 성장(省長)책임제를 더욱 완비하여 실시하고,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절대농지(永久基本農田) 획정업무를 전면적으로 전개하도록 함.
 - － 식량 주산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농업을 중시하고 식량생산을 보장하도록 하며, 주소비지에서는 자신의 식량생산 책임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함.
 - － 과학기술수준에 따라 주요 농산물의 자급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농업 발전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결정하도록 함.
 - － 식량 주산지에서 축산업과 식량가공업 발전을 지원하며, 농산물 산지에서 단순가공에 대한 보조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농산물 정밀가공업을 발전시키도록 함.
 - － 대규모 표준화 목장 건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축·가금류 우량종 공정을 실시하며, 축산업의 규모화·집약화·표준화 발전을 가속화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
- 농산물 유통방식의 혁신, 국내·국제 시장과 자원의 총괄적인 이용능력 제고
 - － 전국 농산물 시장체계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시설 건설과 관련 서비스의 강화에 주력하며 교역제도를 완비하도록 함.
 - － 농산물 산지시장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며, 공익성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함.
 - － 전자상거래, 물류,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등 기업이 농업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에서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종합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함.
 - － 농산물 수출입 조절·관리를 강화하고, 비교우위농산물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며, 식량·면화·식용당 등 중요 농산물의 수출입과 관세할당제 관리를 완비하도록 함.
 - － 농산물 무역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기업집단을 육성하며, 해외농업협력모델을 혁신하고 농산물 가공·운송·무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해외농업협력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농민 소득증대 촉진을 위한 해농정책 강화

- 농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 내부의 소득증대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농촌의 2·3차 산업에서의 소득증대 공간을 개발하며, 농촌 외부에서의 소득증대 채널을 확대해야 하며, 농업보조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도농 주민 간 소득격차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도록 함.

○ 농업·농촌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 보장 및 농업보조 정책의 효과 제고

- 농업과 농촌부문에 각종 재정지출을 우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재정투입의 안정적인 증가와 농업·농촌에 대한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인프라투자가 농업과 농촌에 집중되도록 함.
- 농민의 소득증대, 농촌개혁, 농촌 인프라건설,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촌 민생개선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하도록 함.
- 식량재배 농가에 대한 직불제, 우량종 보조, 농기계 구입보조, 농자재 종합보조 등 4대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농업보조 정책에 대한 개혁을 일부 지방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여 보조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농기계 구입보조정책을 완비하여 주산지와 신형 농업경영주체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절수관개시설 구입보조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농촌 1·2·3차 산업의 융합(6차 산업화) 발전 추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외부 소득원 확대

-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산업체인을 연장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함. 이를 위해 자원우위와 시장수요에 따라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재배업과 농산물 가공업, 농촌 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함.
- 역사적·민족적 특징을 갖춘 촌(村)·진(鎭) 건설을 지원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특징이 뚜렷한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며, 농촌지역 휴양관광지에 대한 인프라 건설 투입을 확대하도록 함.
- 동일노동·동일임금(同工同酬) 정책을 실시하고 농촌유출노동력(農民工)의 노동보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며, 농촌유출노동력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함.
- 도시로 이주한 농민과 그 가족이 도시지역의 기본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시지역 사회보험의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농촌유출노동력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자녀가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완비하도록 함.

□ 도농 통합발전을 위한 신농촌건설 추진

○ 농촌 인프라건설 확대 및 농촌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

- 농촌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와 농촌지역 전력망 개조·업그레이드를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서부지역과 빈곤지역의 농촌 공공도로 건설을 가속화하도록 함.
- 농촌의 의무교육서비스 수준을 전면 개선하고 진학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중등직업교육과 직업기능훈련을 추진하며, 중등직업교육과정에 대한 무상교육을 점차 실현하도록 함.

- 도농 주민의 중대질병에 대한 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농촌 기층의 기본의료서비스와 공공위생능력을 강화하도록 함.
- 도농 일체화의 기본양로(養老)보험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다양한 농촌양로서비스 및 문화 체육시설 건설을 지원하도록 함.

○ 사회자본의 농촌지역 투자 유도 및 장려

- 사회자본의 농촌지역 인프라건설에 대한 투자와 농촌지역에서의 사업전개를 장려하도록 함.
- 정부주도·재정지원의 농촌 공공사업에 대해 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작 등의 방식을 채용하여 기업과 사회조직이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전면적인 농촌개혁의 심화

○ 농촌 집단재산권제도 개혁 추진

- 토지 등 자원성 집단자산에 대해 토지도급경영권 권리 확정·등기·증서발급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시범지역의 범위를 성(省)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함.
- 비경영성 자산에 대해 공공서비스능력 제고에 유리한 집단운영관리 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경영성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권관계를 분명하게 처리하여 지분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주식합작제를 발전시키도록 함.
- 집단자산에 대한 농민의 지분권을 부여하는 개혁시범사업을 전개하되, 시범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농민의 이익침해를 방지하며 시범사업 업무를 해당 지역 집단경제조직 내부로 제한하여 엄격하게 실시하도록 함.

○ 농촌토지제도 개혁시범사업의 점진적 추진

- 토지공유제 원칙과 경지면적의 하한 목표를 유지하고 농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농촌토지제도 개혁을 신중하고 온건하게 추진하도록 함.
- 농촌토지의 수용, 집단 경영성건설용지의 시장 진입, 주택지제도의 개혁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토지수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을 제정하도록 함.
- 규획과 용도 제한에 부합하는 농촌 집단경영성건설용지에 대해 양도, 임대, 지분출자의 권한을 부여하며, 완비된 시장거래 규칙과 서비스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함.
- 농민의 주택지에 대한 권익을 법에 의거하여 보장하고, 농민의 주택지 취득방식을 개혁하며, 농민에 대한 새로운 주택보장 메커니즘을 모색하도록 함.

□ 시사점

-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12년(2004~2015년) 연속으로 삼농문제를 주제로 한 ‘중양 1호 문건’을 하달한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초유의 일임.
- 현재의 중국 지도부는 농업의 현대화와 발전이 부강한 국가를 실현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라는 인식 하에 과거 지도부에 이어 당면한 삼농문제 해결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
 - 중국은 국가 현대화 발전을 위해 신형 공업화, 신형 정보화, 신형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시적 발전을 도모하는 “4화 동보(四化同步)”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현대화를 국가 발전을 위한 가장 관건이 되는 분야로 주목하고 있음.
 - 농업분야는 현대화 수준이 가장 낮고 개혁이 미진한 분야로, 중국 정부는 삼농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현대화와 발전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계획임.
- 올해 발표된 ‘중양 1호 문건’은 내용면에서 지난해에 발표된 ‘중양 1호 문건’과 비교하여 새로운 농정 이슈나 과제가 제시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 지난해 제시되었던 추진과제들이 우선순위를 달리하거나 보다 구체화 되었음.
 - 올해 ‘중양 1호 문건’의 주요 주제는 농촌개혁과 농업현대화 추진의 가속화로, 2014년에 발표된 ‘중양 1호 문건’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 농촌개혁과 관련해서는 농촌토지제도 개혁과 농촌 집단재산권제도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됨.
 - 작년에 이어 식량안보 보장과 관련한 식량생산능력의 지속적인 강화가 가장 첫 번째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으며, 특히 과거와 달리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省長)책임제를 강조한 것이 특징임.
- 시진핑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가 전반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에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 정책 및 보조금정책 개혁,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농민들의 재산권제도 개혁, 농촌 발전의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제도 개혁 등이 지속적으로 주요 개혁과제로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

◆ ‘식량안보 성장(省長)책임제’ 실시²⁾

2) 본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新華社》(2015.2.5), 〈糧食局解讀“關於建立健全糧食安全省長責任制的若干意見”〉; 呂詩文(2015), 〈糧食安全省長責任制 承擔主體責任 保障糧食安全〉, 《吉林農業》, 2015年第2期; 《光明日報》(2015.1.25), 〈省長責任制: 為糧食安全保駕護航〉; 國務院(2015.1.22), 〈國務院關於建立健全糧食安全省長責任制的若干意見〉; 文新三(2014), 〈對國家糧食安全省長責任制的幾點思考〉, 《山東經濟戰略研究》, 2014年第3期.

□ 개요

- 국무원은 지난 1월 22일 《식량안보 성장책임제 완비 및 건립에 관한 몇 가지 의견(關於建立健全糧食安全省長責任制的若干意見)》(이하 《의견》으로 표기)을 발표하고 이를 각 지방정부에 시달함.
- － 본 《의견》 제정은 성(省)급의 지방정부가 식량안보 확보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각 성(자치구, 직할시)별로 성장(省長)의 책임 하에 역내 식량의 생산능력, 비축능력, 유통능력 등을 전면 강화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함.

표 3 중국의 주요 식량 수급 전망(2014~2023년)

	쌀		밀		옥수수	
	생산량(만톤)	소비량(만톤)	생산량(만톤)	소비량(만톤)	생산량(만톤)	소비량(만톤)
2014년	14,214	13,523	12,228	12,136	21,774	20,421
2015년	14,113	13,633	12,288	12,234	22,007	21,508
2016년	14,016	13,706	12,349	12,310	22,655	22,178
2017년	13,988	13,787	12,410	12,386	22,994	22,855
2018년	13,955	13,874	12,469	12,470	23,308	23,674
2019년	14,050	13,969	12,520	12,555	23,588	24,487
2020년	14,146	14,064	12,572	12,635	23,863	25,202
2021년	14,193	14,111	12,610	12,680	24,146	25,728
2022년	14,240	14,158	12,647	12,721	24,422	26,174
2023년	14,290	14,208	12,685	12,757	24,692	26,533

자료: 中國農業科學院 農業信息研究所(2014), 《中國農業展望報告(2014-2023)》.

□ 배경 및 의의

- 중국은 2014년까지 11년간 연속해서 식량 증산을 이뤘으나 자원제약, 도시화 추진, 인구증가, 경제구조 조정 등 농업이 당면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식량의 수급 균형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 중국의 1인당 경지면적과 담수보유량은 세계 평균과 비교할 때 각각 1/3과 1/4 수준에 불과, 농업 관련 부존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안정적인 식량 증산에 대한 어려움도 확대되고 있음.
- － 중국은 현재 인구 증가,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 도시화의 가속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식량소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식량자급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방에서는 식량생산이나 식량유통을 경시하거나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식량안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중국은 1994년 ‘식량생산의 성장책임제’를 처음 실시한 이후 각종 문건이나 정부보고를 통해 지방정부의 식량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바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의견》을 통해 처음으로 지방정부의 식량안보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국무원은 1994년 《식량의 구매 및 판매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深化糧食購銷體制改革的通知)》를 발표하고 “성(자치구, 직할시) 정부 책임제를 시행함으로써 현지 식량의 수급균형 달성, 경지면적과 식량비축의 안정화, 지역 식량비축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한 시장 조절, 식량공급과 식량가격의 안정을 달성할 것”을 처음으로 규정함
- 1995년 발표한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재배면적 보장, 단수 제고, 비축 증가,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등과 함께 식량공급을 책임지도록 하는 “쌀포대(米袋子)” 성장책임제의 실시를 재차 강조하였음.
- 《의견》에서는 기존의 식량공급 성장책임제의 내용을 더욱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성장(省長)이 책임져야 할 8개 분야³⁾를 제시하였으며, 보장조치와 관리감독 및 심사 강화와 관련한 규정을 둠으로써 ‘식량안보 성장책임제’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식량 생산 · 비축 · 유통능력의 강화

- 식량 생산능력의 제고를 위해 식량생산의 안정과 지속적인 증산을 강조하였으며, 식량의 지속가능한 생산능력의 향상, 식량생산에서 과학기술 공헌을 제고, 신형 식량생산경영체계 수립 등의 정책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 식량생산의 안정을 위해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실시하여 경지면적 하한 목표와 식량재배 면적의 하한선을 지키도록 하였으며, 특히 토지경영권의 유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물의 비식량화(非糧化)와 토지사용의 비농업화(非農化)를 금지할 것을 강조하였음.
- 고표준 농지 건설을 가속화하여 ‘전국 고표준 농지건설 계획’에서 확정한 건설 임무를 기간 내에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절수농업과 한작(旱作)농업의 발전, 에너지절약기술과 순환농업기술의 보급, 농업기상재해 및 병충해 예방 시스템 구축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식량의 지속가능한

3) 《의견》에서는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성장(省長)이 책임져야 할 내용으로 △식량생산의 안정과 식량생산능력의 강화 △식량지원정책의 완비와 농민의 식량재배에 대한 적극성 보호 △지역 식량비축 관리 △식량의 구매 · 비축 · 공급 안전보장 프로젝트의 실시와 식량유통능력의 강화 △국유식량기업 개혁의 심화와 식량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 △지역 식량시장 조절 · 관리 메커니즘 완비와 식량시장의 안정 유지 △식량 품질안전 보장체계 수립 및 관리감독 △식량절약 · 손실절감 추진과 건강한 식량소비 유도 등 8개 분야를 적시하고 있음.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함.

- 식량생산의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식량 단수를 제고하고, 식량생산 과학기술의 혁신 및 보급 과정에서 사회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투입을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식량생산에 대한 공헌율을 제고하도록 함.
 - 식량재배 전업농,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등 신형 식량생산경영주체를 적극 육성하고, 재정지원과 신용대출 금융지원 등을 통해 합작식·주문식·위탁관리식 등의 식량생산 경영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함.
 - 식량을 재배하는 농민의 적극성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업보험제도를 완비하는 등 식량지원정책을 구체화하며, 식량재배 농가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량의 시장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용두기업과 식량생산자 간 긴밀한 이익연결관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함.
- 식량비축능력의 강화는 지방정부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조절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한 수단임. 따라서 《의견》에서는 지방정부가 식량비축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지역별 식량비축을 잘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국가 유관부문에서 확정한 비축규모와 기간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 식량비축을 충실히 이행하되 지방정부는 정기적으로 식량 비축품목·수량 등에 관한 정보를 국가 유관부문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식량비축의 지역분포 및 품목구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비축과 사회비축이 결합된 새로운 식량비축체계를 모색하되 조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장주체가 식량비축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식량비축 협조기제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시장조절과 식량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최근 들어 식량생산이 주산지에 더욱 집중되면서 식량 생산과 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 간 식량 유통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간 식량수급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의견》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식량유통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주산지⁴⁾는 식량 생산량의 76%, 비축량의 71%, 소비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소비지의 경우 생산량의 7%, 비축량의 9%, 소비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식량의 생산·비축·소비에서 지역 간 불균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음.⁵⁾
 - 식량의 수매·비축·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양안공정(糧安工程)’을 실시하고, 식량 저장물류시설을

4) 중국은 2001년 식량유통체계 개혁 과정에서 식량의 수급 현황에 따라 전국을 주산지(主產區), 주소비지(主銷區), 수급균형지(產銷平衡區)로 구분하였음. 구체적인 지역분포를 보면 △식량 주산지(13개):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내몽고자치구, 허북성, 하남성, 산둥성, 강소성,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식량 주소비지(7개):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광둥성, 해남성 △수급균형지(11개): 산서성, 섬서성, 중경시, 귀주성, 광서장족자치구, 운남성, 영하회족자치구, 감숙성, 청해성, 서장자치구, 시장자치구로 구분됨.

5) 농업부의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지역 간 식량 유통량은 정책성 식량 5,265만 톤, 비축량의 지역배분에 따른 유통량 1,000만 톤, 시장 유통량 1억 6,500만 톤으로 총 2억 2,765만 톤에 달함.

차질 없이 건설하며, 투융자 방식을 혁신하고 사회자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식량수매 및 비축규모에 부합하고 지역분포가 합리적인 저장물류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하도록 함.

- 지역 간 식량물류 통로를 조성하여 식량물류네트워크를 적극 발전시키고, 식량교역센터의 기능을 완비하며, 식량의 생산·판매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주소비지·수급균형지와 주산지 간에 더욱 안정적인 생산 및 판매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였음.
- 기업이 주산지에 식량자원기지를 건설하고 저장물류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며, 동시에 식량 주산지는 기업이 주소비지에 저장물류시설과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함.

□ 식량산업의 발전 촉진과 식량시장의 안정 보장

- 《의견》은 각 지방정부가 신형 식량유통주체를 육성하고, 식량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국유식량기업의 개혁을 추진하는 등 식량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유식량기업 개혁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국유자본과 집체자본·비공유자본이 서로 지분을 보유하는 신형 시장주체를 육성하는 등 혼합소유제 식량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도록 함.
 - 대형 농업산업화 용두기업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식량기업집단을 육성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집중과 식량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중대형 식품가공기업이 저장물류시설을 건설하고 농촌지역까지 생산·판매망을 확대하는 것을 장려함.
 -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적절한 보상원칙에 따라 핵심 식량가공기업을 선발하여 식량시장의 조절체계에 포함시키고, 식량시장의 상황에 따라 기업의 비식품 용도의 식량가공을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킴으로써 기업이 식량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식량시장 조절·관리제도와 식량의 긴급공급보장체계를 완비하고, 식량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지역 식량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였음.
 - 2017년까지 지방정부는 지역분포가 합리적이고 운영이 효율적인 식량의 긴급공급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재해나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식량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위해 모든 향(鄉)·진(鎭)에 최소 1개 이상의 긴급공급 지점망(網點)을 설치하고, 직할시나 성(省) 수도 등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인구 3만 명 당 최소 1개 이상의 지점망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긴급가공기업이나 배송센터를 갖추도록 요구하였음.
 - 중대형 도시와 식량가격의 파동이 쉽게 발생하는 도시의 경우 10~15일의 시장공급량에 달하는 식량비축량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조건에 부합하는 식량가공·경영기업이 자발적 참여나 정부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식량의 긴급공급 임무를 담당하게 하고 지원하도록 함.
 - 식량주산지에 속하는 현(縣)의 식량생산량 샘플조사제도를 구축하고 각종 식량 관련 기업이 규정에

따라 식량행정관리부문에 관련 통계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하여 식량의 생산·유통·가공·소비와 관련한 조사통계체계를 완비하고 식량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도록 함.

□ 식량의 품질 안전관리 강화 및 식량 절약을 위한 조치

- 식량의 품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지오염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완비된 품질안전 보장체계를 갖추며,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제 등을 실시하도록 함.
 - － 경지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경지회복, 식부구조 조정, 식량생산 금지구역 획정 등의 조치를 취해 식량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학비료나 농약 등 농업투입재에 대한 관리감독제도를 완비하고, 농촌쓰레기·농약폐기물·오수 등의 집중처리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여 경지오염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 － 2018년까지 모든 지역에 “안전 식량·안전 식용유” 공급망을 구축하고, 완비된 품질안전 표준 체계를 수립하여 식량의 생산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제와 책임추궁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지방정부의 속지관리와 기층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縣)·향(鄉)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함.
- 저장과 운송, 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식량의 연간 손실량은 약 3,500만 톤 수준으로, 식량의 손실과 낭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의견》에서는 식량 절약 및 손실 절감, 건강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음.
 - － 식량의 생산·유통·소비 등 각 영역에서 식량절약 및 손실 절감을 위한 시설과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식량손실률을 낮추도록 하였으며, 식량가공기업이 합리적인 가공기술을 채택함으로써 과도한 가공으로 초래되는 식량 낭비와 영양 손실을 피하도록 하는 한편 부산물 종합 이용율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 시사점

- 국무원이 발표한 《의견》은 과거에 발표된 문건이 식량생산에 국한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일부 제시한 것과 달리 식량안보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행정 관리권(事權)과 책임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한 최초의 문건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음.
- 이번에 발표된 《의견》은 각 성급 정부가 지역의 식량안전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식량의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 식량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성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주요 조치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특히 성 정부가 지역 식량안전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완비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 발표된 문건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과거에 발표된 문건과 달리 지역 식량안보 보장을 위해 식량의 생산능력·비축능력·유통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식량의 양(量)적인 안보 외에도 식량의 질(質)적인 안보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
- 《의견》에서는 식량안보 책임에 대한 심사, 책임 추궁 및 문책 강화 등의 조치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식량안보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대다수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음. 그리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도시화 추진에 비해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낮은 상황이며, 주산지의 경우 식량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지급해야 할 각종 농업보조금이 확대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음. 식량의 생산 및 소비구조의 지역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식량안보의 성장책임제의 정착과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중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기타 주요 농정

- 중국농업부는 식량의 안정적인 증산과 품질 제고, 효율 증대, 발전방식의 전환을 이루고 안정 속의 발전과 구조 최적화를 이룸으로써 식량 생산량을 5.5억 톤 이상에서 안정시키고 재배업 발전의 양호한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제정하고 이를 성·자치구·직할시의 관련 부서에 하달
- 《2015년 재배업 업무 요점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印發“2015年種植業工作要點”的通知)》(農辦農[2015]1호)
- **(업무의 중점)**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량의 확보, △경제작물과 원예작물의 품질과 수익의 향상, △재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 **(업무의 우선)** △자원부족과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목표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지리적 분포를 최적화, △기술혁신과 경영방식의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능력과 품질의 향상에 중점을 두며, 자원을 집약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재배업의 생산방식을 요소투입 의존형에서 기술진보 의존형으로 전환, △발전이 취약한 부문을 정확히 파악하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발전방식과 잠재력 발굴 분야에서 새로운 진전 실현, △재배업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경지의 질을 보호하고 향상시켜 재배업 발전의 기초 강화
- **(주요 업무 내용)** (1)식량재배면적 안정화, (2)식량 다산출 창건 추진, (3)녹색 증산모델 전개, (4)감자의 주식화(主糧化) 적극 추진, (5)면화·유지·식용당 재배면적의 안정, (6)과학기술을 통한 품질 향상 및 효율 증대, (7)원예작물의 “삼품(三品)”향상 운동 지속 전개, (8)채소생산의 안정적

발전 촉진, (9)원예작물 표준원 창건 전개, (10)영구불변의 절대농지 확정, (11)경지의 질 보호 및 향상 운동 전개, (12)국가 경지품질 모니터링 체계 완비, (13)화학비료 사용량 증가율 제로(零) 실천운동 전개, (14)농약 사용량 증가율 제로 실천운동 전개, (15)절수농업의 대대적 발전, (16)병충해 모니터링 강화, (17)통일적 예방 및 관리의 대대적 추진, (18)녹색예방·통제 혁신 추진, (19)농약의 과학적 사용 추진, (20)식물전염병 확산 억제, (21)재해 상황 관리 분석 강화, (22)재해에 대한 과학적 예방 및 감소 추진, (23)기술지도서비스 강화, (24)입법 추진, (25)법에 의한 행정 추진

☞ 자료 원문 링크 http://www.moa.gov.cn/zwlrm/tzgg/tfw/201502/t20150202_4379269.htm

- 중국농업부는 농업발전방식의 전환, 농업구조 및 농촌경제구조의 최적화, 농민의 취업 및 소득증대 촉진을 위해 2015년도에 농산물 가공업에서 추진할 중점 업무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잘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발표하고 각 성·자치구·직할시 관련 부서에 하달
 - － 《2015년 농산물 가공업 중점 업무를 잘 수행할 것에 관한 통지(關於做好2015年農產品加工業重點工作的通知)》(農加發[2015]1호)
 - － **(9대 중점 업무)** (1)농산물 가공업 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2)농산물 산지에서의 단순가공 발전 가속화, (3)주식(主食) 가공업 향상 운동의 전개, (4)농산물 및 가공부산물 종합이용 향상 프로젝트 실시, (5)농산물 가공기술 및 장비수준 향상에 주력, (6)농산물 가공 용두기업 적극 육성, (7)농산물 가공단지 건설 추진, (8)주산지 농산물 가공업 발전 지원 장려, (9)농산물 가공업 관리서비스 수준 제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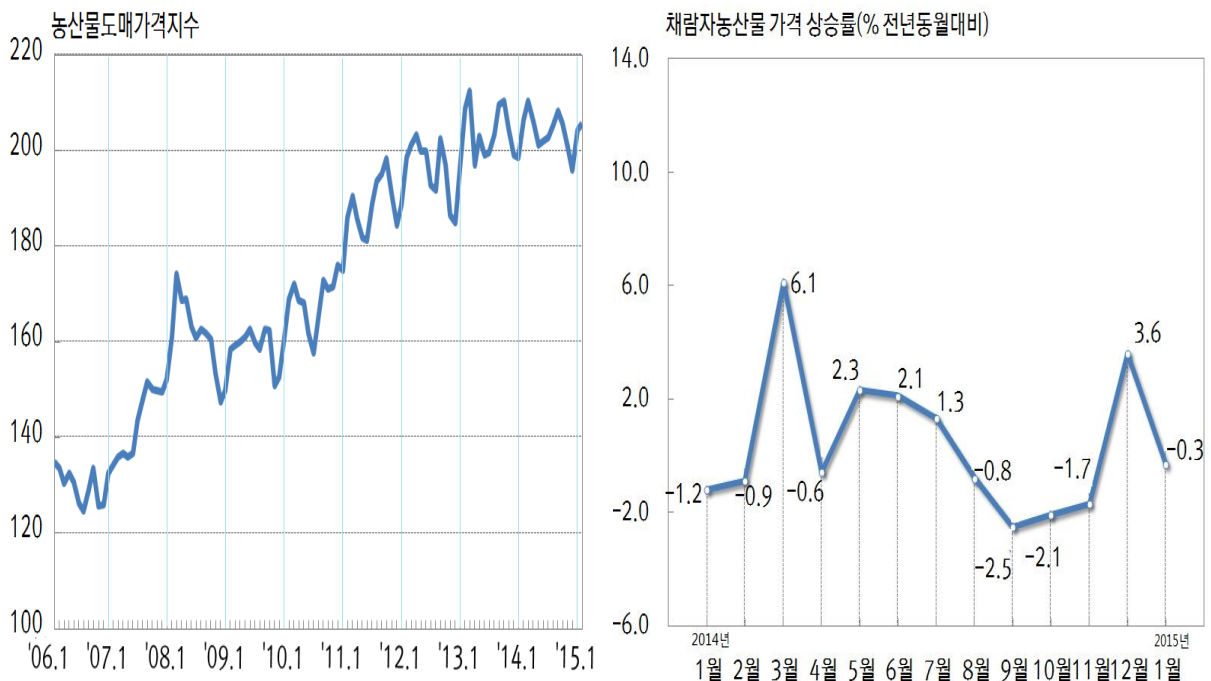
☞ 자료 원문 링크 http://www.moa.gov.cn/zwlrm/tzgg/tz/201501/t20150126_4351697.htm

가격 동향

◆ 농산물⁶⁾ 도매시장가격

- 2015년 1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12월 대비 0.7%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0.4% 하락
- － 채람자(菜篮子)농산물의 2015년 1월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12월 대비 0.8%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0.3% 하락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2000년=100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6) 식량 5개 품목(중단립종쌀, 장립종 쌀, 옥수수, 밀가루, 대두), 유지류 4개 품목(유채씨기름, 콩기름, 땅콩기름, 참기름), 채소 26개 품목(시금치, 배추, 청경채, 양배추, 상추, 가지, 파프리카(青椒), 토마토, 콩고투리(豆角), 무, 당근, 양파, 감자,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연근, 오이, 동과, 호박, 주키니호박,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부추, 대파, 화채(花菜), 브로콜리), 과일 7개 품목(부사사과, 압리(鴨梨), 감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거봉포도), 축산물 5개 품목(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5개 품목(잉어, 민물연어(鱈魚), 초어(草魚), 붕어, 갈치) 등 총 52개 품목

- 품목별 2015년 1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지난 12월에 비해서 식량, 축산물과 버섯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들의 가격이 상승.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양념채소 외에 대부분 품목들의 가격이 하락

표 4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14년 9월 ~ 2015년 1월)

단위: 원, %

품목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6,989	16,882	17,545	17,517	17,314	-1.16	2.81
	콩(1kg)	1,019	1,015	1,067	1,052	1,013	-3.75	-2.90
엽근 채소	배추(10kg)	2,098	2,006	1,593	1,549	1,574	1.63	-3.92
	무(18kg)	4,150	3,767	3,384	3,909	4,628	18.37	-3.35
	양배추(8kg)	1,428	1,342	1,332	1,695	2,169	27.96	-0.72
	당근(20kg)	6,206	5,916	5,729	5,875	5,771	-1.76	-30.00
	감자(20kg)	6,865	6,642	6,875	7,085	7,066	-0.28	-22.27
양념 채소	건고추(600g)	2,882	2,850	3,000	3,080	2,992	-2.88	20.65
	양파(kg)	276	280	285	292	303	3.63	-16.22
	마늘(kg)	775	784	825	858	864	0.69	18.46
	대파(kg)	380	370	344	361	332	-8.05	-40.50
	쪽파(kg)	751	854	843	1,000	1,093	9.25	26.89
과일	사과(부사, 15kg)	22,155	21,068	21,081	21,736	21,826	0.41	18.68
	배(풍수, 15kg)	11,806	12,142	12,568	13,725	14,140	3.02	4.11
	복숭아(kg)	988	1,019	979	1,113	895	-19.52	-60.54
	포도(거봉, 5kg)	5,851	5,872	7,000	7,931	7,748	-2.31	-21.46
	감귤(만다린, kg)	792	592	501	525	626	19.22	-10.92
	감(10kg)	5,374	4,670	4,995	5,252	6,104	16.23	0.14
과채	딸기(2kg)	7,538	10,306	10,735	8,531	6,478	-24.06	-21.16
	토마토(10kg)	3,589	4,255	4,655	5,625	5,999	6.64	-34.01
	오이(kg)	414	455	630	933	771	-17.32	4.24
	수박(kg)	246	304	499	571	630	10.18	-41.98
축산물	쇠고기(kg)	9,405	9,366	9,653	9,634	9,477	-1.63	-1.77
	돼지고기(kg)	3,491	3,394	3,448	3,406	3,253	-4.48	-11.09
	닭고기(kg)	2,687	2,653	2,662	2,656	2,627	-1.10	6.13
버섯	느타리버섯(2kg)	2,191	2,000	2,062	2,239	1,920	-14.25	1.50
	새송이버섯(2kg)	3,346	3,300	3,083	3,009	2,952	-1.87	-13.53
	팽이버섯(2kg)	2,982	2,833	2,890	3,094	3,005	-2.89	-10.23
	표고버섯(2kg)	4,168	4,023	4,007	3,867	3,722	-3.75	-2.73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 소비자물가

- 2015년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12월에 비해 0.3%
상승.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
- 이 중 식품가격은 12월에
비해서는 0.7%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
- 1월 식품가격 상승은 조란
이 주도(8.3% 상승). 신선
과일, 식량의 가격 상승률
도 각각 3.3%, 2.9%로
식품가격 상승에 기여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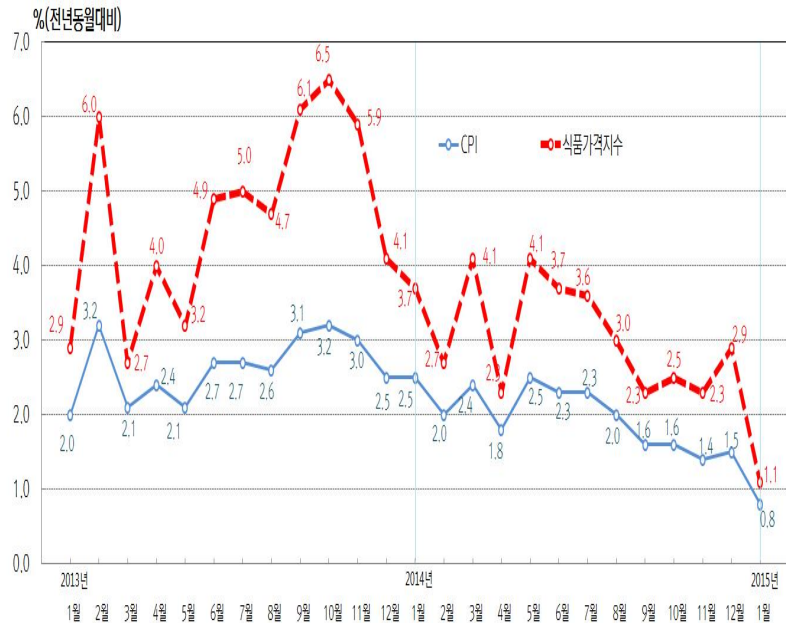


표 5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0	-0.2	0.3	0.3	1.6	1.4	1.5	0.8
식품	-0.2	-0.4	1.2	0.7	2.5	2.3	2.9	1.1
- 식량	0.3	0.1	0.1	0.1	3.5	3.2	3.0	2.9
- 육류	0.0	-0.6	-0.2	-0.6	1.1	0.5	-0.2	-0.8
- 조란(鳥卵)	-3.0	-1.3	-1.6	-3.4	16.4	16.5	14.0	8.3
- 수산물	-1.0	-1.0	1.0	2.2	3.2	2.6	2.4	0.4
- 신선채소	-0.5	-1.6	11.3	4.0	-7.2	-5.2	7.2	-0.6
- 신선과일	-2.2	-0.5	1.9	3.9	15.2	14.0	10.4	3.3
◦ 담배·주류 및 그 용품	0.1	-0.1	0.0	0.0	-0.5	-0.7	-0.7	-0.4
◦ 의류 및 복장	1.0	0.8	0.1	-0.3	2.4	2.6	2.6	2.9
◦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0.2	0.1	0.1	0.2	1.2	1.2	1.1	0.9
◦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0.1	0.1	0.2	0.4	1.3	1.3	1.5	1.6
◦ 교통 및 통신	-0.3	-0.7	-0.3	-0.4	-0.3	-0.8	-1.4	-2.2
◦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0.0	-0.7	-0.2	0.4	1.1	0.1	0.9	0.3
◦ 주택(거주)	0.2	-0.1	-0.1	0.0	1.6	1.4	1.0	0.8

자료: 中國國家統計局(<http://www.agri.gov.cn>)

무역 동향

◆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2014년 12월 농산물 수출액은 54.8억 달러로 11월에 비해 4.6%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5% 감소. 2014년 누적 수출액은 553.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

표 6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2014년 10월 ~ 12월)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14년				12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2014년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51	53	92	584	73.6	-2.1	0.7
02류	육과 식용설육	108	117	130	1,182	11.1	8.3	19.7
04류	낙농품 · 조란 · 천연꿀	49	55	53	585	-3.6	6.0	7.3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141	161	150	2,295	-6.8	-27.2	4.3
06류	산수목 · 꽃	22	25	28	412	12.0	-12.5	49.3
07류	채소	675	773	844	8,229	9.2	0.2	4.5
08류	과실 · 견과류	539	598	587	4,317	-1.8	1.9	3.5
09류	커피 · 차 · 향신료	176	205	202	2,450	-1.5	-8.2	9.1
10류	곡물	56	109	77	447	-29.4	133.3	-13.0
11류	제분공업제품	47	47	52	612	10.6	-11.9	0.2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 · 약용식물, 사료	252	344	417	3,117	21.2	16.8	6.6
13류	식물성엑스	105	103	123	1,303	19.4	9.8	13.2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9	9	9	105	0.0	0.0	18.0
15류	동식물성유지	52	54	63	645	16.7	14.5	6.3
16류	육 · 어류조제품	755	823	804	8,880	-2.3	-5.9	-1.1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127	135	157	1,540	16.3	12.1	6.1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46	54	61	476	13.0	22.0	23.3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29	137	147	1,574	7.3	0.7	2.7
20류	채소 · 과실 조제품	631	684	698	7,637	2.0	-11.4	-2.8
21류	기타 조제식품	231	252	236	2,713	-6.3	4.0	10.1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198	149	145	1,651	-2.7	-22.5	23.1
23류	조제사료	175	197	255	3,271	29.4	21.4	19.6
24류	담배	86	153	148	1,285	-3.3	-23.3	-2.7
합 계		4,660	5,237	5,478	55,310	4.6	-1.5	4.7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月刊)」 第301期, 第302期, 第303期, 第304期.

- 12월 농산물 수입액은 95.5억 달러로 11월에 비해 28.0%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5.1% 감소. 2014년 누적 수입액은 1,01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4% 증가
- 12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HS 12류(49.3%), HS 15류(7.7%), HS 10류(7.6%), HS 08류(6.1%), HS 02류(5.5%), HS 19류(3.3%), HS 22류(3.1%)
- HS 06류, HS 08류, HS 13류, HS 16류는 전년 동월 대비 수입액이 50% 이상 크게 증가

표 7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2014년 10월 ~ 12월)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14년				12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2014년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74	85	87	834	2.4	45.0	93.1
02류	육과 식용설육	408	424	527	5,993	24.3	-6.1	1.1
04류	낙농품 · 조란 · 천연꿀	277	293	267	6,510	-8.9	-64.4	24.1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29	34	42	469	23.5	13.5	-5.8
06류	산수목 · 꽃	19	18	12	191	-33.3	50.0	9.8
07류	채소	149	138	258	2,580	87.0	11.7	1.2
08류	과실 · 견과류	291	331	586	5,133	77.0	65.5	25.2
09류	커피 · 차 · 향신료	33	31	31	345	0.0	10.7	34.8
10류	곡물	401	466	722	6,176	54.9	28.2	22.2
11류	제분공업제품	87	94	92	961	-2.1	-17.9	19.8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 · 약용식물, 사료	2,489	3,461	4,709	45,945	36.1	0.3	7.8
13류	식물성엑스	17	18	25	234	38.9	66.7	4.5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14	17	17	198	0.0	0.0	7.0
15류	동식물성유지	537	642	739	9,125	15.1	-26.3	-15.7
16류	육 · 어류조제품	30	23	24	248	4.3	60.0	25.9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189	144	172	1,786	19.4	-17.3	-24.5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108	102	98	872	-3.9	25.6	22.1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28	257	315	2,814	22.6	10.5	8.9
20류	채소 · 과실 조제품	63	55	60	738	9.1	-15.5	11.5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09	145	137	1,406	-5.5	-5.5	16.7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268	283	298	3,152	5.3	8.8	3.0
23류	조제사료	155	151	169	3,984	11.9	-35.0	9.0
24류	담배	147	244	159	2,093	-34.8	-45.0	43.4
합 계		6,122	7,456	9,546	101,787	28.0	-5.1	7.4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月刊)」 第301期, 第302期, 第303期, 第304期.

◆ 대 세계 식량 수출입

- 2014년 곡물(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440.0천 톤으로 전년의 558.5천 톤에 비해 21.2% 감소
 - － 품목별로 보면 쌀의 수출량이 419.1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95.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2.4% 감소. 옥수수는 20.0천 톤을 수출. 밀은 960 톤을 수출.
 - － 최대 쌀 수출대상국인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236.6천 톤으로 전체 쌀 수출량의 56.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6.8% 감소. 대 북한 수출량은 63.9천 톤으로 전년 대비 29.0% 증가
- 2014년 대두 수출량은 207.0천 톤으로 전년의 209.0천 톤에 비해 0.1% 감소
 - － 최대 대두 수출대상국인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72.0천 톤으로 전체 대두 수출량의 34.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7.0% 증가

표 8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

단위: 천 톤, %

품목	국가	'12년	'13년	2014년					12월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쌀 전체	한국	101.5	323.0	23.4	45.8	80.2	46.4	236.6	-42.2	-26.8
	북한	49.0	49.5	11.5	3.8	0.3	4.7	63.9	1375.0	29.0
	일본	49.8	31.6	0.0	0.0	12.0	12.3	24.7	2.5	-21.8
	기타	78.8	74.3	7.8	7.4	15.2	9.2	89.3	-39.3	22.7
	합 계	279.1	478.4	43.5	57.5	108.8	73.7	419.1	-32.3	-12.4
중단립종쌀(백미)	북한	49.0	49.5	11.5	3.8	0.3	4.7	63.1	1,375.0	27.5
	일본	39.6	30.9	-	0.0	12.0	12.0	24.0	0.0	-22.4
	홍콩	22.7	22.6	1.4	1.3	2.1	1.8	22.8	-13.4	1.2
	기타	86.1	136.9	13.2	12.4	24.4	27.2	96.6	11.6	-25.3
	합 계	197.3	239.9	27.1	19.2	39.3	46.5	215.8	18.5	-6.1
장립종쌀(백미)	합 계	13.8	5.4	1.2	1.1	72.0	0.3	12.1	-94.6	123.7
밀	합 계	-	2.5	0.1	0.2	0.0	0.0	1.0	-	-61.9
옥수수	북한	257.1	76.6	3.3	0.6	1.3	1.4	15.7	6.3	-79.5
	기타	0.2	1.1	-	0.0	0.0	0.4	4.0	-	353.4
	합 계	257.3	77.6	3.4	0.7	1.3	1.8	20.0	40.5	-74.2
대두	한국	132.5	52.5	0.1	0.7	7.1	3.8	72.0	-46.7	37.0
	일본	42.4	40.2	1.4	1.3	2.8	2.6	35.8	-7.4	-11.1
	미국	91.4	77.4	9.4	3.4	0.5	2.4	70.7	363.5	-8.7
	기타	53.9	38.8	0.9	1.4	1.9	2.1	25.0	9.3	-27.5
	합 계	320.1	209.0	11.9	7.1	13.1	11.2	207.0	-14.6	-1.0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谷物市场进出口报告」 第168期, 第177期, 第178期, 第179期, 第180期; 「油料进出口数量报告」 第168期, 第177期, 第178期, 第179期, 第180期.

표 9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

단위: 천 톤, %

품목	국가	'12년	'13년	2014년					12월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누적액	전월 대비	전년 동기대비
쌀 전체	태국	175.4	299.8	57.6	61.7	85.6	101.3	727.8	18.3	142.8
	베트남	1,545.1	1,481.0	114.6	110.2	114.0	112.0	1,352.1	-1.8	-8.7
	파키스탄	579.6	417.0	2.1	2.6	19.9	84.9	406.7	327.9	-2.5
	기타	44.6	46.6	5.8	5.4	9.2	10.2	52.4	11.1	32.6
	합 계	2,344.6	2,244.3	180.0	179.8	228.7	321.6	2,556.6	40.6	13.9
장립종쌀 (백미)	태국	120.8	159.0	37.6	51.0	68.4	69.7	503.8	1.8	216.8
	베트남	1,308.7	998.4	46.5	43.1	25.3	35.1	695.3	38.5	-30.4
	파키스탄	178.2	245.0	0.1	1.1	15.3	69.4	249.7	354.0	1.9
	기타	314.3	19.9	-	0.0	0.0	0.0	0.0	-	-
	합 계	1,921.9	1,422.3	89.8	99.8	114.1	182.1	1,485.7	59.6	4.5
중단립종쌀 (백미)	태국	15.0	27.2	0.2	0.9	0.2	2.8	26.6	1,054.2	-2.0
	베트남	94.5	263.4	45.5	55.8	71.8	48.3	514.6	-32.7	95.4
	파키스탄	0.1	13.6	-	0.0	0.0	0.0	16.5	-	21.3
	기타	1.2	2.0	0.1	0.0	0.0	0.7	1.5	1,600.0	335.3
	합 계	110.7	306.1	45.8	56.6	72.0	51.7	562.9	-28.2	83.9
밀	호주	2,425.1	611.4	51.8	10.9	8.2	33.7	1,390.6	311.4	127.4
	미국	645.1	3,820.4	42.5	16.8	11.7	2.6	862.9	-77.9	-77.4
	캐나다	401.5	866.8	33.0	1.0	2.4	1.0	410.9	-59.8	-52.6
	기타	216.9	208.5	6.3	11.6	20.9	0.3	242.4	-98.5	159.5
	합 계	3,688.6	5,507.1	133.7	40.3	43.3	47.6	2,971.4	9.9	-46.0
보리	호주	2,078.4	1,759.3	343.3	173.9	32.8	233.4	3,877.6	611.5	120.4
	캐나다	313.8	376.9	31.7	32.1	2.6	133.8	559.6	5,146.3	48.5
	프랑스	23.0	133.3	265.7	12.8	49.1	415.0	764.2	745.7	473.3
	기타	112.5	65.8	116.5	-	49.5	0.0	203.0	-100.0	219.1
	합 계	2,527.7	2,335.3	757.1	218.8	136.9	783.1	5,413.5	471.9	131.8
옥수수	미국	5,113.3	2,967.7	16.1	14.0	19.8	18.3	1,027.1	-7.9	-65.4
	라오스	52.7	81.8	0.1	8.9	20.7	53.6	110.1	159.4	34.5
	미얀마	18.5	26.1	-	-	0.0	30.1	41.0	-	57.2
	기타	22.9	189.3	4.3	91.3	218.6	110.7	1,025.0	-49.3	442.6
	합 계	5,207.4	3,264.9	20.5	114.2	259.1	607.2	2,598.0	134.4	-20.4
대두	미국	25,970.8	22,234.3	-	251.9	4,667.2	7,778.5	30,024.8	66.7	35.0
	캐나다	630.2	839.6	0.8	1.2	0.97	342.1	862.7	35,171.1	2.7
	브라질	23,891.0	31,808.6	3,369.0	2,637.8	539.4	171.0	32,005.4	-68.3	0.6
	아르헨티나	5,896.2	6,124.5	979.7	706.0	510.2	183.3	6,004.5	-64.1	-1.9
	기타	1,995.6	2,368.3	678.2	504.9	309.7	51.9	2,501.7	-83.2	5.6
	합 계	58,383.8	63,375.2	5,027.7	4,101.9	6,026.4	8,526.8	71,399.0	41.5	12.7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谷物市场进出口报告」第168期, 第177期, 第178期, 第179期, 第180期; 「油料进出口数量报告」第168期, 第177期, 第178期, 第179期, 第180期.

- 2014년 곡물(쌀, 밀, 보리, 옥수수) 수입량은 13,539.5천 톤으로 전년에 비해 1.4% 증가
 - －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보리가 5,413.5천 톤(40.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밀 2,971.4천 톤(21.9%)**, **옥수수 2,598.0천 톤(19.2%)**, **쌀 2,556.6천 톤(18.9%)** 순
- 2014년 12월 중 최대 수입 곡물인 보리의 수입량은 783.1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471.9% 증가. 올해의 누적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1.8% 증가
- 밀의 2014년 12월 수입량은 47.6천 톤으로 전월 대비 9.9% 증가. 올해의 누적 수입량은 전년 대비 46.0% 감소
 - － 2014년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호주 46.8%, 미국 29.0% 차지
- 옥수수의 2014년 12월 수입량은 607.2천 톤으로 전월 대비 134.4% 증가. 올해의 누적 수입량은 전년 대비 20.4% 감소
-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⁷⁾ 2014년 12월 수입량은 321.6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40.6% 증가. 올해의 누적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13.9% 증가
 - － 12월 수입량 중 백미(精米)가 233.8천 톤으로 72.7%를 차지하고, 나머지 벼·현미·새미 등이 27.3% 차지. 수입 백미 중 장립종과 중단립종의 비율은 각각 77.9%와 22.1% 차지
 - － 12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베트남 34.8%, 태국 31.5%, 파키스탄 26.4% 순. 2012년 이후 최대 수입대상국이었던 태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파키스탄과 베트남으로부터 쌀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 12월 톤 당 평균 수입가격(FOB)은 미국산 549.2달러, 파키스탄산 380.4달러, 베트남산 392.5달러, 태국산 409.8달러⁸⁾. 전월 대비 수입가격 증감률은 각각 0.2% 상승, 3.5%, 7.9%, 0.4% 하락
- 2014년 12월 대두 수입량은 8,526.8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41.5% 증가. 2014년의 누적 수입량은 71,399.0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7% 증가
 - － 12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미국 91.2%, 캐나다 4.0%로 대부분을 차지. 2014년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은 브라질 44.8%, 미국 42.1% 차지

7)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50%, 비국영 무역(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50%를 차지. 2015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으로 이중 장립종이 50%(266만 톤), 중단립종이 50%(266만 톤)를 차지.

8) 쇄미율이 태국산, 베트남산, 파키스탄산은 모두 5%이며, 미국산은 4~5%(国家粮油信息中心, 「稻米市场价格报告」 第3045期(2014.12.1)~3067期(2014.12.31))

◆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 2015년 1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2.2억 달러로 지난 12월에 비해 28.1%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3.6% 증가.
- －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49.1%, 식량 15.5%, 채소 21.0%, 특용잠사 6.4%, 축산물 3.6%, 과실 2.4%
- － 상위 10개 품목: 쌀(11.7%), 혼합조제식료품(9.4%), 전분박(5.2%), 고추(5.0%), 기타 채소(4.9%), 김치(3.8%), 당면(3.3%), 초코렛(3.2%), 한약재 기타(2.8%), 기타 소오스제품(2.2%)→ 51.3%

표 10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2014년 12월 ~ 2015년 1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12월	2015년 1월	2015년 1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66,174	28,300	-57.2	164.6	164.6
		서류	546	1,040	90.5	72.0	72.0
		두류	17,949	3,543	-80.3	-43.2	-43.2
		전분	4,382	1,730	-60.5	1.1	1.1
		계	89,051	34,613	-61.1	79.8	79.8
	채소		56,085	46,918	-16.3	2.5	2.5
	과실		5,773	5,383	-6.8	-18.3	-18.3
	화훼		2,358	2,039	-13.5	31.2	31.2
	버섯		2,502	2,406	-3.8	33.1	33.1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21,545	10,838	-49.7	-13.6	-13.6
		차류	256	194	-24.2	-83.5	-83.5
		연초류	478	245	-48.7	22.4	22.4
		인삼류	551	69	-87.5	-70.9	-70.9
		한약재	1,710	920	-46.2	-25.8	-25.8
		잠사류	2,367	2,022	-14.6	-4.3	-4.3
		계	26,907	14,288	-46.9	-18.4	-18.4
	농산가공품		118,190	109,655	-7.2	-4.8	-4.8
	소 계		300,866	215,302	-28.4	3.7	3.7
축 산 물	산동물		620	252	-59.4	-20.7	-20.7
	육류		3,318	2,853	-14.0	45.9	45.9
	난류		129	269	108.5	141.9	141.9
	낙농품		0	0	-	-99.9	-99.9
	기타 축산물		5,781	4,715	-18.4	-13.9	-13.9
	소 계		9,848	8,089	-17.9	1.1	1.1
합 계			310,714	223,391	-28.1	3.6	3.6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2015년 1월 한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액은 7,997만 달러로 지난 12월에 비해 6.3%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48.5% 증가.
-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57.2%, 축산물 21.8%, 과실 9.3%, 특용잠사 6.2%, 채소 1.5%, 식량 0.9%
 - 상위 10개 품목: 조제분유(7.5%), 혼합조제식료품(7.1%), 비스킷(6.3%), 기타 베이커리제품(6.0%), 커피조제품(5.8%), 쇠고기(5.5%), 단일과실조제품(4.8%), 자당(4.7%), 라면(3.9%), 홍삼(3.5%) → 55.0%

표 11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2014년 12월 ~ 2015년 1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12월	2015년 1월	2015년 1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577	453	-21.5	345.2	345.2
		서류	11	18	63.6	25.8	25.8
		두류	1	235	23,400.0	-	-
		전분	18	9	-50.0	-	-
		계	607	715	17.8	516.0	516.0
	채소		1,248	1,164	-6.7	248.0	248.0
	과실		6,909	7,465	8.0	111.2	111.2
	화훼		3,311	2,423	-26.8	19.4	19.4
	버섯		0	0	-	-	-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0	4	-	443.5	443.5
		차류	87	87	0.0	-57.7	-57.7
		연초류	180	0	-	-	-
		인삼류	3,815	4,893	28.3	1,241.8	1,241.8
		한약재	85	0	-	-	-
		잠사류	7	1	-85.7	-95.1	-95.1
		계	4,174	4,985	19.4	541.0	541.0
	농산가공품		52,340	45,783	-12.5	12.0	12.0
소 계		68,589	62,535	-8.8	31.1	31.1	
축 산 물	산동물		0	0	-	-	-
	육류		2,483	4,905	97.5	1,409.2	1,409.2
	난류		0	0	-	-	-
	낙농품		10,022	8,338	-16.8	212.8	212.8
	기타 축산물		4,295	4,196	-2.3	32.9	32.9
	소 계		16,800	17,439	3.8	183.7	183.7
합 계			85,389	79,974	-6.3	48.5	48.5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표 12

2015년 1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쌀	26,047	11.7	조제분유	5,969	7.5
2	혼합조제식료품	21,094	9.4	혼합조제식료품	5,647	7.1
3	전분박	11,533	5.2	비스킷	5,022	6.3
4	고추	11,127	5.0	기타베이커리제품	4,808	6.0
5	기타 채소	10,923	4.9	커피조제품	4,626	5.8
6	김치	8,506	3.8	쇠고기	4,430	5.5
7	당면	7,458	3.3	단일과실조제품	3,801	4.8
8	초코렛	6,727	3.0	자당	3,724	4.7
9	한약재 기타	6,311	2.8	라면	3,104	3.9
10	기타 소오스제품	4,824	2.2	홍삼	2,834	3.5
11	기타 과실	4,284	1.9	가죽	2,615	3.3
12	땅콩	4,251	1.9	기타 음료	2,475	3.1
13	개 사료	3,838	1.7	난초	2,289	2.9
14	채소종자	3,665	1.6	유자	2,274	2.8
15	기타 당	3,564	1.6	초코렛	1,644	2.1
16	캔디	3,362	1.5	생우유	1,456	1.8
17	기타 채유종실	3,260	1.5	맥주	1,453	1.8
18	들깨	3,024	1.4	캔디	1,355	1.7
19	물	2,962	1.3	기타 소오스제품	1,080	1.4
20	배합 사료	2,676	1.2	맥주	973	1.2
21	당근	2,614	1.2	채소종자	908	1.1
22	비스킷	2,341	1.0	소 원피	882	1.1
23	화분	2,081	0.9	기타 과실	664	0.8
24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1,981	0.9	기타 당	647	0.8
25	혼합조미료	1,895	0.8	기타 양모,섬수모,조수모 등	629	0.8
26	마늘	1,757	0.8	소주	589	0.7
27	팔	1,704	0.8	과실혼합물	587	0.7
28	기타 양모,섬수모,조수모 등	1,683	0.8	백삼	579	0.7
29	고구마 전분	1,644	0.7	기타 식물성액즙	559	0.7
30	생사	1,471	0.7	고추장	503	0.6
31	국화	1,442	0.6	우유조제품	477	0.6
32	기타 식물성액즙	1,435	0.6	수삼	476	0.6
33	기타 식물성산물	1,307	0.6	곡류조제품	475	0.6
34	포도당	1,261	0.6	홍삼조제품	461	0.6
35	가티 파스타	1,254	0.6	기타 조제식료품	453	0.6
합 계		175,307	78.5	합 계	70,470	88.1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주요 단신

제 목
• 《식품안전 표본추출검사 관리방법》, 2월 1일 전면 시행
• 하남(河南)성 정주(鄭州)시에 육류수입 전용항구 건설
• 농산물 정부지정가격제, 2015년부터 전면 폐지
• 감자, 중국의 4대 주요 식량작물이 될 전망
• 중국, 내염성(耐鹽性) 대두 유전자연구에 큰 진척
• 금융기구의 농가소액대출 이자소득에 대해 영업세 면제
• 식량기업의 2014년 식량수매량 3.65억 톤
• 2014년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2% 상승
• 흑룡강성(黑龍江省), 對러시아 돼지고기 수출 강화
• 《목본유지산업(木本糲料産業)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발표
• 2015년 ‘중앙 1호 문건’의 핵심은 토지개혁
• 2012~14년 농산물 단순가공시설에 대해 16억 위안 보조
• 농민이 선정한 2014년 10대 삼농이슈
• 2015년 1월 대두 수입량 700만 톤
• 귀주성(貴州省), 차(茶) 재배면적 전국 1위
• 2014년 농민 1인당 평균소득 9.2% 증가
• 2014년 중국 요식업 매출액 2.8조 위안
• 국가현대농업시범구 283개로 증가
• 절강성 농민 1인당 소득, 2만 위안에 근접
• 강소성, 2014년 불합격 처리된 수입식품 321.7만 달러
• 2014년 말 기준 농민전업합작사 총 128.88만 개
• 농기계 구입보조 대상 확대 조정

※ 상기 주요 단신의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글로벌농정” → “중국농업정보” → “동향스크랩” (<http://www.krei.re.kr/web/www/51>)에 게재되어 있음.